

9. 燃料使用規制告示改正告示

環境處告示 第91-90號 1991. 12. 18

연료사용규제고시(환경처고시 제91-9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용유류의 황함유기준 및 공급지역·사용시설의 범위와 연료의 제조·사용 등의 규제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료”라 함은 열의 공급·에너지의 제조 등을 목적으로 연소시키는데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2. “연료용 유류”라 함은 원유를 정제한 석유제품중 연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중유(병커-A유, 병커-B유, 병커-C유), 경유, 저황왁스유(LSWR)와 기타 환경처장관이 인정하는 유류를 말한다.

3. “저황유”라 함은 제4조에 정한 연료용 유류의 황함유기준에 적합한 유류를 말한다.
4. “황함유량”이라 함은 연료용 유류중 포함된 황분의 중량 백분율을 말한다.
5. “사업자”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7. “아파트”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4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8. “연립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동당

건축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9. “전용면적”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등기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상의 “표시란(건물의 전유부분 표시)”의 면적을 말한다.

10. “열공급시설”이라 함은 연료를 연소시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증기나 온수를 열을 목적에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11. “공급관”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을 말한다)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12. “석유정제업자”라 함은 석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석유판매업자”라 함은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 3 조 (적용배제) ①이 고시는 전기·태양열 또는 풍력 등 대기오염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난방용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이 고시는 해상의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이 고시중 제5조의 규정은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석유비축물량을 방출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 장 저황유의 사용

제 4 조 <연료용 유류의 황함유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용유류의 황함유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 5 조 (저황유의 공급 및 사용지역)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황함유기준에 적합한 유류(이하 “저황유”라 한다)의 공급 및 사용지역은 별표 2와 같다.

②연료용유류 사용자는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황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저황유 공급·사용 지역 및 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저황유 이외의 연료용유류를 공급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황유사용 면제승인을 받은 시설에 대한 유류의 공급 또는 판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부산직할시 또는 전라남도 여천시 지

역내의 화력발전소중 별표 3에서 정한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그 정한 조건에 따라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

제 6 조 (저황유의 사용면제승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황유 이외의 유류를 사용하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저황유사용면제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관할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저황유 사용면제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승인받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요약 설명서
2. 공정별 배출시설에 대한 설명서
3. 대체연료의 사용량 및 성분분석서
4. 공정별 오염물질의 방지시설 및 방지원리 등의 설명서
5. 저황유와 대체연료의 사용시 오염물질 배출량 비교표
6. 연료비, 방지시설설치비, 운영비 등의 경제성검토서

제 7 조 (황함유량 분석방법) 연료용 유류중의 황함유량 분석방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

제 8 조 (시험분석기관) 연료용 유류중의 황함유량을 분석할 수 있는 시험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립환경연구원 및 지방환경청

2.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소)
3. 한국석유품질검사소
4. 서울특별시공업시험소

제 3 장 고체연료의 사용금지

제 9 조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체연료의 사용이 금지되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인천직할시, 대구직할시, 광주직할시 및 대전직할시
2. 경기도의 수원시, 부천시,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안양시, 의정부시, 안산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구리시, 미금시 및 남양주군
3. 경상남도의 울산시 및 울산군

제10조 (고체연료 사용승인) ①②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사업자는 사용승인을 받아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

1.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내의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열병합발전시설에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2.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열병합발전시설에 석탄연료를 제외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3. 자기사업장(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당해 사업장)에서 배출된 가연성폐기물(폐지, 폐목재 및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중 염소화합물 또는 페놀화합물이 함유되지 않은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섬유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시설의 연료로 이용하는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장의 조업상태 등의 변화로 최초 승인된 가연성폐기물의 배출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얻어 다른 사업장의 동종의 가연성폐기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고체연료사용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4에서 정하는 고체연료 사용시설 설치승인기준에 적합한 설치계획서

2. 연료의 형태, 높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설치계획서

3. 연료자동측정기 및 연료감시모니터의 설치계획서

4. 배출 및 방지지설 설치비, 운영비 등의 경제성 검토서

제 4 장 청정연료의 사용

제11조(청정연료 사용지역 및 대상시설의 범위)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내의 업무용(영업용 및 공공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열공급시설, 중앙집중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및 발전소는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2. 인천직할시, 경기도의 수원시, 부천시,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안양시, 의정부시, 안산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구리시, 고양군

제12조(업무용 열공급시설의 연료사용)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청정연료 사용의무지역내의 업무용 열공급시설은 그 시설용량의 합계가 시간당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에 대하여 적용되 그 사용연료 및 시행시기는 [별표 5]와 같다.

제13조(중앙집중난방방식 공동주택의 연료사용)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청정

연료 사용의무지역내의 중앙집중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은 동일한 열공급시설(여러 단지에 대하여 공동으로 열을 공급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열을 공급받는 단지내의 모든 세대의 평균전용면적이 46.2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되 그 사용연료 및 시행시기는 [별표 6]과 같다.

제14조(수도권지역내 발전시설의 연료사용)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청정연료 사용의무지역내의 발전소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발전소는 [별표 7]에서 정한 조건대로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발전소에 순간적으로 전력수요의 증가 또는 도시가스용 수요급증 등의 사유로 액화천연가스(LNG)만으로는 전력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순간에너지 사용량의 15% 이내에서 경유 또는 저황악스유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인천화력발전소의 경우에는 15% 이내에서 B-C유를 사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가 액화천연가스(LNG) 이외의 연료를 15% 초과사용하여야 할 사유 발생시 환경처장관에게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조정받

아 사용할 수 있다.

④수도권지역내의 업무용 열병합발전시설은 1992.10.1일부터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업무용 열병합발전시설로서 그 구조가 액화천연가스(LNG)만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주로 내연기관식인 경우를 말한다)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하여 승인받은 연료와 액화천연가스(LNG)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액화천연가스 배관망 설치계획 제출)

도시가스사업자는 당해연도의 액화천연가스(LNG)사용의무화 대상시설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계획서를 당해연도 1월31일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설치계획서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관이 설치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설치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설치완료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난방열 사용) ①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이하 “지역난방”이라 한다) 공급계획 지역으로 공고된 지역에 지역난방공급사업 주체(“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장”)을 말한다. 이

하 같다)가 지역난방 공급계획을 확정
한 경우 동 지역내의 제12조 내지 제
13조 규정에 의한 청정연료사용 대상
시설은 청정연료 또는 지역난바을 선택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난방공급
사업주체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사업허가
를 득하여 지역난방공급을 확정된 열공
급시설(청정연료 사용대상시설)에 대하
여는 이 고시중 제12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청
정연료사용 대상시설은 지역난방열 공
급시까지 경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지역난방공급사업자는 당해
년도 지역난방 대상시설에 대한 공급관
설치계획서를 당해년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설치계획서에 따
라 지역난방공급관이 설치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15일 이
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설치완료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연료용 유류의 공급 또는 판매금
지 조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판매
업자는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천
연가스(LNG)만을 사용하여야 하는 각
대상시설의 사용의무화 시행시기 이후
부터는 연료용유류를 공급 판매하여서
는 아니된다. 다만, 제16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지역난방 공급계획시설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시설
또는 연료 전환을 위한 시설대체 공사
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경유 또는 저황
악스유(LSWR)를 공급 또는 판매할 수
있다.

제18조(겸용버너에 대한 봉인조치) ①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천연가스
(LNG)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대
상시설에 액화천연가스(LNG)②와 연
료용유류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겸용
버너를 설치한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
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연료용유류의 공
급관에 대한 봉인조치를 요청하여야 한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인을 받은
경우 액화천연가스(LNG)의 공급중단
사태 등으로 연료용유류를 사용하지 아
니하면 아니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
하여 관계공무원의 봉인해제를 받아 사
용하여야 하며, 사용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다시 봉인을 요청하여야 한
다. 다만, 예측되지 아니한 가스공급중
단사태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선
봉인을 제거한 후 사용하되 즉시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고시는 본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저황유 사용의무 지역중 창원시, 구미시 및 고양군 지역의 저황유 사용은 '92.1.1일부터 시행된다.

제 2 조(액화천연가스 배관망 미설치 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천연가스(LNG)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 고시의 시행일 또는 제12호 내지 제14호에서 정한 시까지 액화천연가스 배관망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관망이 설치 완료되어 액화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액화천연가

스 사용에 관한 이 고시 규정의 적용을 유보하되, 적용일 이후부터는 경유 또는 저황왁스유(LSWR)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3 조(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행한 조치 등에 대한 경과조치) 환경처 고시 제 91-20호(1991.4.11), 91-59호(1991.10.14)에 의한 금지·승인등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이 고시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 4 조(공동주택의 연료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중 1988.1.1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1992.8.31까지는 경유를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연료용 유류의 황함유기준 (제4조 관련)

연료용유류	황함유기준
중유(벙커-A, 벙커-B, 벙커-C)	1.6% 이하, 1.0% 이하
경유	0.4% 이하, 0.2% 이하
저황확스유	0.3% 이하

[별표 2]

저황유 공급 및 사용지역 (제5조제1항 관련)

대상지역	황함유율	시행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직할시 ○ 경기도 : 수원시, 부천시,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안양시, 의왕시, 의정부시, 안산시, 군포시, 시흥시, 구리시, 미금시, 하남시, 고양군, 남양주군, 광주군, 김포군 ○ 전남 : 여천시, 여천군 ○ 경북 : 포항시, 구미시 ○ 경남 : 울산시, 울산군, 김해시, 김해군, 양산군, 창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C유 : 1.6% 이하 ○ 경유 : 0.4% 이하 	1991년 4월 11월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 경기도 : 수원시, 부천시,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안양시, 의정부시, 안산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구리시, 미금시, 하남시, 고양군, 남양주군, 광주군, 김포군 	○ B-C유 : 1.0% 이하	1993년 7월 1일부터

대 상 지 역	황 함 유 율	시 행 시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직할시 ○ 경기도 : 수원시, 구리시,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안양시, 의왕시, 의정부시, 안산시, 군포시, 시흥시, 구리시, 미금시, 하남시, 고양군, 남양주군, 광주군, 김포군 ○ 전 남 : 여천시, 여천군 ○ 경 북 : 포항시, 구미시 ○ 경 남 : 울산시, 울산군, 김해시, 김해군, 양산군, 창원시 	○ 경유 : 0.2% 이하	1993년 7월 1일부터

[별표3]

화력발전소의 연료사용 조건 (제5조 제4항 관련)

발전소명	소재지	연료 사용	연료 사용 조건
			예외 조건
부산 화력	부산직할시	황함유량 2.5% 이하의 액체연료	전체 황함유량이 2.5%(병커-C유 중량기준) 이하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병커-C유와 석탄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호남 화력	여천시	황함유량 1.6% 이하의 액체연료	전체 황함유량이 1.6%(병커-C유 중량기준) 이하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병커-C유와 석탄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여수 화력	여천시	황함유량 1.6% 이하의 액체연료	

[별표4]

고체연료 사용시설설치 승인기준 (제 10조제 2항 관련)

구	분	고체연료 사용시설 설치기준
배출시설 굴뚝높이	가. 석탄사용시설 나. 기타 고체연료 사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사용시설은 100m 이상 • 기타시설은 20m 이상
비산분진 방지시설	가. 석탄사용시설 - 수 송 - 저장 - 연소재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수송은 밀폐콘베어벨트 또는 밀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 석탄저장은 옥내저장시설(사이로 포함) 또는 지하저장시설에 저장하여야 한다. • 연소재는 밀폐통을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나. 기타고체연료 사용시설 - 수 송 - 저장 - 연소재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송은 유개차를 이용하여야 한다. • 저장은 옥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 연소재 운반은 유개차를 이용하여야 한다.
오염물질 측정기 부착	가. 석탄사용시설 나. 기타고체연료 사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사용시설은 SO₂, NO_x, 분진 O₂의 자동오염물질 측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기타시설은 매연 모니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5]

업무용 시설의 연료사용 (제 12조 관련)

대 상 지 역	열공급 시설 용량의 합	사 용 연 료	시행시기
○ 서울특별시	○ 126만 킬로칼로리 이상	액화천연가스(LNG)	'88. 9. 1
	○ 63만 킬로칼로리 이상	액 화 천 연 가 스 (LNG)	'90. 9. 1
	126만 킬로칼로리 미만	또는 경유	
	○ 30만 킬로칼로리 이상	액 화 천 연 가 스 (LNG)	'91. 9. 1
	63만 킬로칼로리 미만	또는 경유	
○ 수도권 지역 (서울특별시 제외)	○ 126만 킬로칼로리 이상	액화천연가스(LNG)	'91. 9. 1
	○ 30만 킬로칼로리 이상	액 화 천 연 가 스 (LNG)	'92. 9. 1
	○ 126만 킬로칼로리 미만	또는 경유	

[별표6]

중앙집중난방방식 공동주택의 연료사용 (제 13조 관련)

대 상 지 역	대상시설	평균전용면적	사 용 연 료	시 행 시 기	
○ 서울특별시	신 축	아 파 트	○ 46.2 제 곱 미 터 이 상 82.6제 곱 미 터 미 만	○ 액 화 천 연 가 스 (LNG) 또 는 경 유	○ '90.1.24일 이 후 주 택 건 설 축 진 법 의 규 정 에 의 하 여 사 업 승 인 을 받 아 건 설 중 인 시 설
			○ 82.6 제 곱 미 터 이 상	○ 액 화 천 연 가 스 (LNG)	
	연 립 주 택	○ 46.2 제 곱 미 터 이 상 82.6제 곱 미 터 미 만	○ 액 화 천 연 가 스 (LNG) 또 는 경 유	○ '91.4.11 이 후 주 택 건 설 축 진 법 의 규 정 에 의 하 여 사 업 승 인 을 받 아 건 설 중 인 시 설	
			○ 82.6 제 곱 미 터 이 상		○ 액 화 천 연 가 스 (LNG)

대 상 지 역	대상	시설	평균전용면적	사 용 연 료	시 행 시 기
	기 존	아 파 트	○ 115.7 제 곱 미 터 이 상	○ 액 화 천 연 가 스 (LNG)	○ '90. 9. 1
			○ 99.1 제 곱 미 터 이 상	○ "	○ '91. 9. 1
	○ 82.6 제 곱 미 터 이 상		○ "	○ '92. 9. 1	
		연 립 주 택	○ 99.1 제 곱 미 터 이 상	○ 액 화 천 연 가 스 (LNG)	○ '91. 11. 1
		○ 82.6 제 곱 미 터 이 상	○ "	○ '92. 9. 1	
○ 수도권 지역 (서울특별시 제외)	신 축	아 파 트	○ 46.2 제 곱 미 터 이 상 82.6 제 곱 미 터 미 만	○ 액 화 천 연 가 스 (LNG) 또는 경 유	○ '91.1.1 이 후 주 택 건 설 촉 진 법 의 규 정 에 의 하 여 사 업 승 인 을 받 아 시 설 중 인 시 설
			○ 82.6 제 곱 미 터 이 상	○ 액 화 천 연 가 스 (LNG)	
		연 립 주 택	○ 46.2 제 곱 미 터 이 상 82.6 제 곱 미 터 미 만	○ 액 화 천 연 가 스 (LNG) 또는 경 유	○ '91.4.11 이 후 주 택 건 설 촉 진 법 의 규 정 에 의 하 여 사 업 승 인 을 받 아 건 설 중 인 시 설
		○ 82.6 제 곱 미 터 이 상	○ 액 화 천 연 가 스 (LNG)		
	기 존	아 파 트	○ 115.7 제 곱 미 터 이 상	○ 액 화 천 연 가 스 (LNG)	○ '91. 9. 1
			○ 99.1 제 곱 미 터 이 상	○ "	○ '92. 9. 1
			○ 86.6 제 곱 미 터 이 상	○ "	○ '93. 9. 1

대 상 지 역	대상	시설	평균전용면적	사 용 연 료	시 행 시 기
		연립주택	○ 115.1 제 곱 미 터 이 상	○ 액 화 천 연 가 스 (LNG)	○ '91. 11. 1
			○ 99.1 제 곱 미 터 이 상	○ "	○ '92. 9. 1
			○ 82.6 제 곱 미 터 이 상	○ "	○ '93. 9. 1

[별표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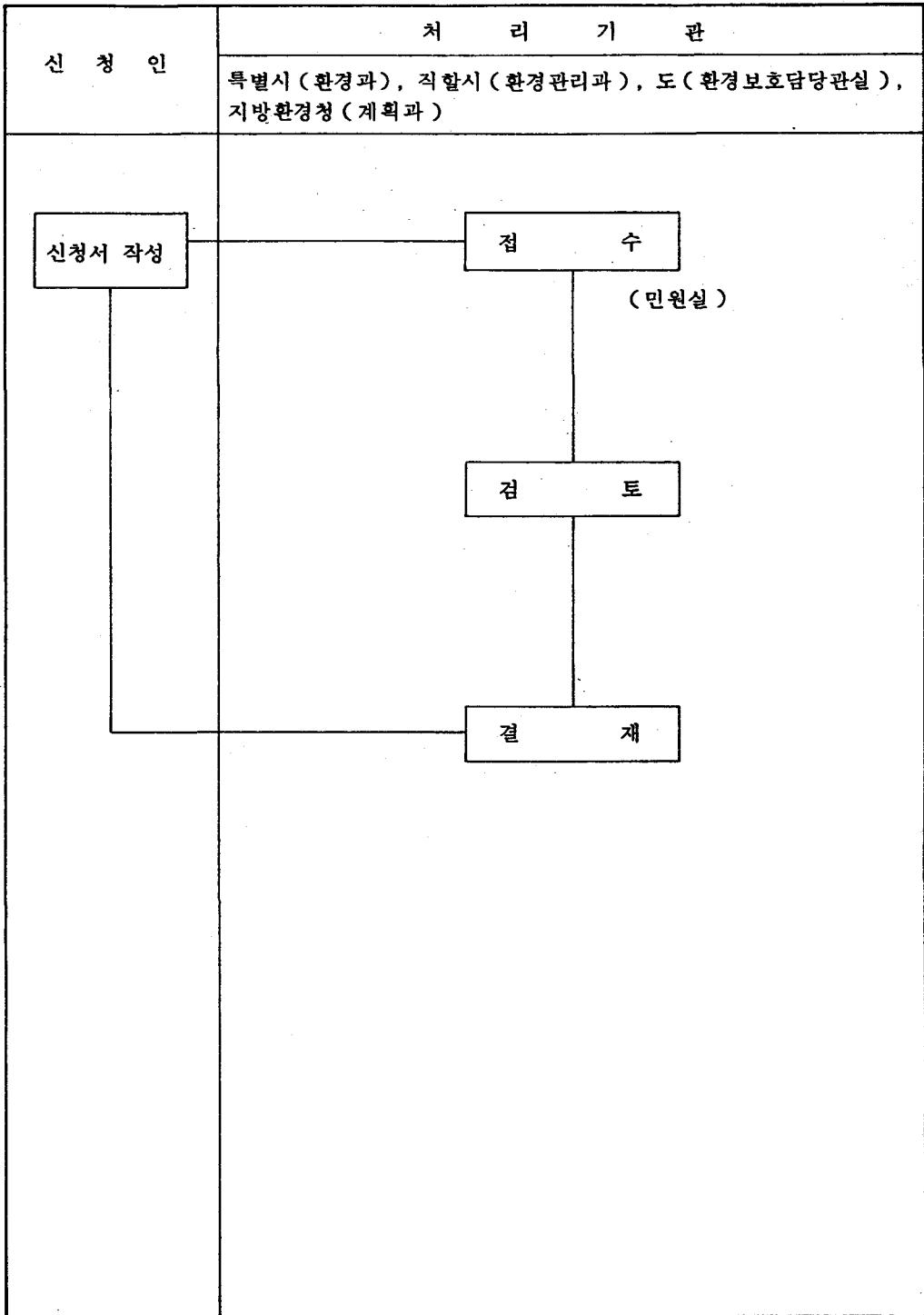
수도권지역 기존 발전시설의 연료사용

발전소명	소 재 지	사 용 연 료	사 용 기 간
서울화력	서울특별시	저황악스유(LSWR)	'92.9.30일까지
인천화력	인천직할시	액화천연가스(LNG)	계 속 사 용
경인화력	인천직할시	저황악스류(LSWR)	'97.8.31일까지

저 황 유 사 용 면 제 승 인 신 청 서						처리기간
						20 일
신 청 인	① 상 호 (사업장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번호:)				
	⑤ 승인대상시설 및 사용연료					
배출시설명	용 량	수 량	사용연료명	방지사설명	용 량	수 량
<p style="text-align: center;">대기환경보전법 제 26 조, 동법 시행령 제 18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황유의 사용면제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신청인 (서명 또는 지장)</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지방환경청장 서울특별시장 직 할 시 장 귀하 도 지 사</p>						
* 첨부서류						수 수 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승인받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요약 설명서 1부 2. 공정별 배출시설에 대한 설명서 1부 3. 대체연료의 사용량 및 성분분석서 1부 4. 공정별, 오염물질의 방지사설 및 방지원리등의 상세한 설명서 1부 5. 저황유와 대체연료 사용시 오염물질 배출량 비교표 1부 6. 연료비, 방지사설설치비, 운영비등의 경제성 검토서 1부 						없 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